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전문공보관 자장검사 한기식

전화 051-520-4361

보도자료
2024. 2. 1.(목)

주책임자 : 금융경제범죄전담부장
전화번호 : 051-520-4312

「신생아 학대」를 집단 은폐한 병원장 등 12명 기소

- 「신생아 학대」 범행을 3년간 조직적으로 은폐한 병원 수간호사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병원장 등 병원관계자 10명 불구속 기소 -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부산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장옥환)는 병원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신생아 학대」 범행을 은폐한 사실을 밝혀내고, 총 12명을 증거 위조, 의료법위반, 위증 등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 병원장 등 관계자들이 ① 의료기록 위조, ② 피 묻은 배냇저고리 폐기, ③ 허위소견서 제출, ④ 집단 허위증언 등의 방법으로 「신생아 학대」 범행을 은폐해 온 정황을 파악해 병원관계자 13명을 인지하였고,
- 전체 범행을 주도한 수간호사, 행정부장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병원장, 의사, 간호조무사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본건은 병원 관계자들이 「신생아 학대」사건 발생 이후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3년간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집단 사법방해를 한 사안으로,

- 당청은, 「신생아 학대」 사건의 재판을 진행하던 중, 사건 당일 CCTV를 면밀히 분석하여, 『CCTV에서 확인되는 피해 아기의 간호기록부』와 『수사 기관에 제출된 간호기록부』가 상이한 것을 발견해 수사에 착수하였고,
- 신속한 압수수색을 통해 위조된 의료기록, 3년간 공범 사이의 문자메시지 및 통화 녹취파일 등 다량의 물적 증거를 확보해 병원 관계자 전부가 역할 분담하에 치밀하게 범행 은폐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 피해 아기의 부모는 사건 직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병원 전부가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는바, 본건 수사를 통해 3년간 병원 측과 기나긴 다툼을 해 온 피해 아기 부모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 검찰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실체 진실 발견을 통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사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법방해사범에 대하여 엄정 대처함으로써 사법신뢰 회복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I

피고인

순번	피고인	직책	구체적 역할	처분	참고
1	A (여, 57세)	대표병원장	· 간호기록부 위조 ¹⁾ · 피물은 배넛저고리 폐기 · 허위소견서 작성, 제출 · 위증교사	구공판	
2	B (남, 53세)	병원장	· 위증	구공판	
3	C (남, 60세)	의사	· 허위소견서 작성, 제출 · 위증	구공판	
4	D (남, 56세)	행정부장	· 간호기록부 위조 · 피물은 배넛저고리 폐기 · 허위소견서 제출 · 위증교사 · 위증	구공판	'24. 1. 12. 구속
5	E (여, 45세)	수간호사	· 간호기록부 위조 · 피물은 배넛저고리 폐기 · 허위소견서 작성, 제출 · 위증교사 · 위증	구공판	'24. 1. 12. 구속
6	F (여, 44세)		· 간호기록부 위조	구공판	
7	G (여, 46세)	간호 조무사	· 피물은 배넛저고리 폐기 · 위증	구공판	
8	H (여, 28세)		· 간호기록부 위조 · 위증	구약식	
9	I (여, 37세)		· 간호기록부 위조 · 위증	구공판	
10	J (여, 37세)		· 간호기록부 위조	*기소유예	
11	K (여, 36세)		· 간호기록부 위조	구약식	
12	L (여, 28세)		· 간호기록부 위조	구약식	
13	M ²⁾ (여, 49세)		· 간호기록부 위조 · 허위소견서 작성, 제출	구공판	

* 퇴사 직원으로 병원의 은폐행위에 대해 적극증언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참작하여 기소유예

1)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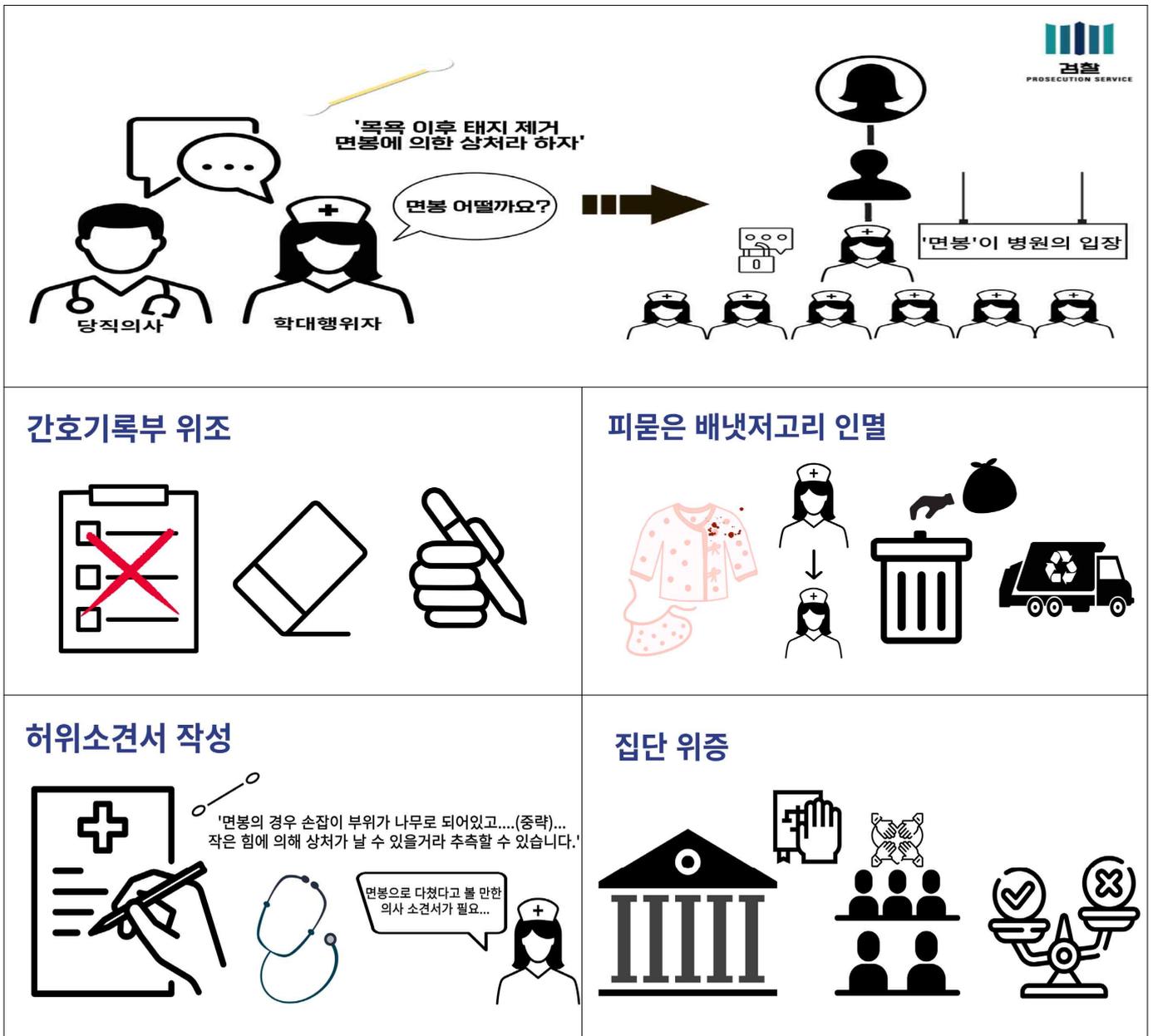
2) 신생아 학대행위자로, '자기' 사건의 증거를 위조하였는바 '증거위조'로는 의율하지 아니하고 '의료법위반'으로만 의율

II 공소사실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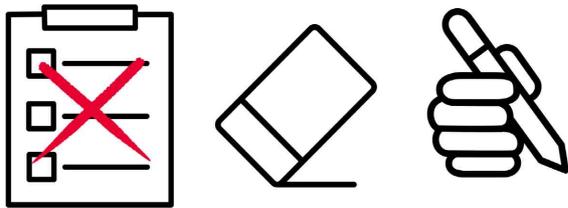
[전체 범행 개요]

- 학대행위자 M은 '21. 2. 7. 아기가 울고 보채자 CCTV 사각지대로 아기를 데려가 귀를 잡아당기고 비틀어 상해를 가함. 병원관계자들은 「학대행위」가 아닌 「목욕시간에 면봉으로 태지를 제거하다가 발생한 상처」로 사건 경위를 조작
- 병원관계자들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① 피해 아기의 간호기록부를 위조하고, ②피 묻은 배냇저고리를 인멸하고, ③허위소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④상급자들은 주요 증인들에 대해 위증을 교사하고, 주요 증인 7명은 집단으로 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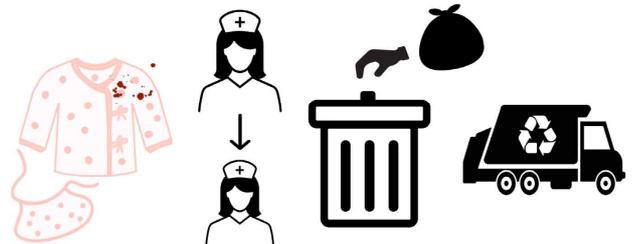
[범행 개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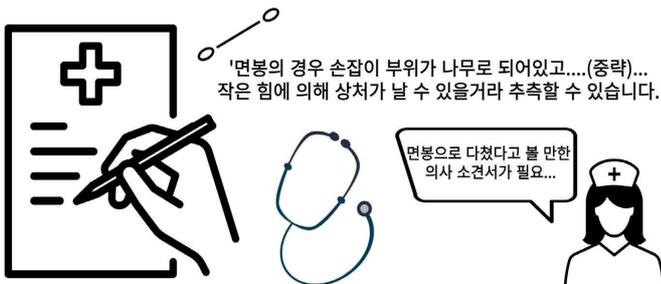
간호기록부 위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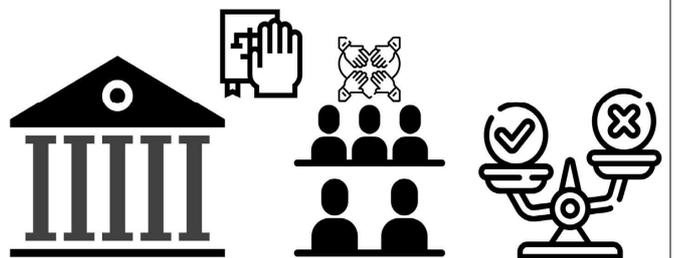
피묻은 배냇저고리 인멸



허위소견서 작성



집단 위증



1. 간호조무사에 의한 「학대」 사건의 발생 및 병원의 은폐 공모

간호조무사 M³⁾은 '21. 2. 7. 01:00 신생아 피해 아기(생후 19일)가 자지 않고 심하게 보채자,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가 귀를 당기고 비틀어 전치 21일의 좌측 이개부열상을 가함. 병원관계자들은 「학대행위」가 아닌 「목욕시간에 면봉으로 태지를 제거하다가 발생한 상처」로 사건 경위를 조작한 뒤, 사건 은폐를 위해 증거물을 위조·인멸하고, 수사 및 재판에서 집단으로 허위 진술할 것을 공모

2. 간호기록부 위조 - A, D, E, F, H, I, J, K, L, M의 공동범행

'21. 2. 7.~ 4. 19.경 공모하여, 학대 의심을 피하기 위해 3회에 걸쳐 간호기록부 활동양상 부분의 '매우보챔'을 '양호'로 고친 새로운 간호기록부 차트를 만들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으로 증거위조, 의료법위반, 위조증거사용

※ 각 피고인별로 1, 2, 3차 위조에 일부씩 가담, 대표병원장 A는 양벌규정으로 처벌

3. 피 묻은 배넛저고리 폐기 - A, D, E, G의 공동범행

'21. 2. 7.~ 8.경 공모하여, 피해아기 가족들이 면봉과 배넛저고리 등 증거물을 찾기 위해 신생아실 내부와 병원 밖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 묻은 배넛저고리 1장을 몰래 폐기해 증거인멸

4. 허위소견서 제출 - A, C, D, E, M의 공동범행

'21. 4. 26.경 공모하여, 경찰로부터 「면봉에 의한 과실」을 입증할 서류가 있다면 제출하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상처는 면봉에 의해 발생한 상처로 추측된다」는 취지의 허위 소견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 증거위조, 의료법위반, 위조증거사용

5. 위증교사 - A, D, E의 공동범행

'21. 2. 7.~ '23. 9. 공모하여, 간호조무사들에게 재판에서 「학대행위」가 아닌 「면봉에 의한 과실」로 발생한 상처라는 허위 진술을 할 것을 지시하고, G, H, I는 '23. 9.~ 11.경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증언하여 G, H, I에 대한 위증교사

6. 위증 - B, C, D, E, G, H, I의 각 단독범행

'23. 9.~ 11. 법정에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학대행위」가 아닌 「면봉에 의한 과실」로 발생한 사건이다, '병원은 사건을 은폐한 사실이 없다', '간호기록부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배넛저고리를 본 적도 없다'는 등으로 진술하여 각 위증

3) 2022. 5. 27. 부산지방법부지원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중

III

수사 경과

- '21. 2. 7. M의 △△△(생후 19일)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 발생
- '21. 6. 2. 부산시경, M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송치
- '22. 5. 27. 당청, M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으로 기소
※ 사경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최종 송치하였으나, 1년간의 추가 수사를 통해 학대행위로 기소
- '22. 6.~ 부산서부지원, M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재판 진행
- '23. 10.~11 당청, CCTV 분석 및 간호조무사 J 조사
- '23. 11. 22. 당청, 병원 및 관계자들에 대한 1차 압수수색
- '24. 1. 12. 당청, 병원 행정부장 D, 수간호사 E 구속
- '24. 1. 17. 당청, 관계자들에 대한 2차 압수수색
- '24. 1. 31. 당청, 피고인 2명 구속 기소, 10명 불구속 기소

IV

수사결과 및 의의

① 신생아학대 병원관계자 13명의 계획적 집단 사범방해 범행 적발

- 이 사건은 병원장을 비롯한 병원관계자 13명이 「신생아 학대」 사건 발생 이후 약 3년간 범행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사범방해 행위를 한 사안임
- 검찰은 병원장 등 관계자들이 사건 발생 후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① 의료기록 위조, ② 피문은 배넛저고리 폐기, ③ 허위소견서 제출, ④ 집단 허위증언 등 범행을 조직적으로 은폐해 온 사실을 밝혀냄

② 사범 방해 범행 인지 후, 신속한 압수수색으로 핵심 증거 확보

- (수사경위) 검찰은 「신생아 학대」 재판을 진행하던 중,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간호기록부 기재』와 『수사기관에 제출된 간호기록부 기재』가 상이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수사에 착수

-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확보) 병원 및 관계자들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 및 포렌식 작업을 통해 위조된 차트, 공범 간 메시지 및 통화 녹취파일 (3년간의 메시지, 통화녹취 700분 이상) 등 다량의 물적 증거 확보
- 압수물에서 조직적 은폐한 증거가 다수 발견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 관계자 14명의 구체적 진술을 확보하여, 범행 전모를 확인

· 2021. 2. 10. E수간호사가 작성한 문서: 「CCTV를 분 단위로 분석한 문서」를 병원 공유폴더에 공유하고, 학대행위자인 M간호조무사, 중요 증인인 G, I간호조무사에게 발송하면서, 「(특정시간을 지칭하며)이 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발생시간을 조작하자」는 등으로 지시한 사실 확인

· 2023. 8. 31. E수간호사 - G간호조무사 대화내역 : 「최악의 경우는...조직적 은폐 플러스 작당 모의한 거에 대해 수사를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이미 건널 수 있는 타이밍을 다 놓친거야...우리는 이미 작당모의 다하고, 입 다 다물고, 은폐 다하고...」

· D행정부장의 휴대폰 일정 : 「M, G, I 경찰 조사 동행, 「OO법률사무소 미팅」 등 주요 조사 및 재판 일정을 전부 모니터링 한 내역 확인

③ 병원 관계자 전부가 역할 분담하에 치밀하게 범행 은폐에 가담

- (전체 범행구조) 병원장 - 행정부장 - 의사/수간호사 - 간호조무사 순으로 순차 범행 은폐 지시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폐쇄적·수직적인 병원 조직의 특성 때문에 3년간 그 은폐 행위가 밝혀지지 않았음
- (사건 당일) 사건 당일부터 조직적으로 사건 발생 경위를 조작
 - 학대행위자는 7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병원관계자들은 「학대행위」가 아닌 「목욕시간에 면봉으로 태지를 제거하다가 발생한 상처」로 사건 경위를 조작한 뒤, 부모에게 조작된 경위를 설명
 - 한편, 피해 아기 부모가 쓰레기 더미에서 「면봉, 옷가지」 등 증거물을 찾아 해매는 것을 알면서, 피 묻은 배냇저고리 등을 폐기해 증거를 인멸
- (수사단계) 수사단계에서도 증거위조 및 허위진술을 통해 범행을 적극 은폐
 - 본격적 수사가 시작되자 CCTV영상을 분석해 사건 시간을 조작하고, 수사기관에 소환된 핵심 증인들에게 분석 문서를 배포하면서 진술을 일치시킴
 - ※ 병원은 사건이 목욕시간에 발생한 것으로 조작했기 때문에, 발생 시간도 조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 행정부장은 대표병원장의 지시에 따라 모든 조사에 동행하면서 관계자들의 진술을 맞추었고, 병원은 간호기록부를 위조하거나 허위소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으로 사건을 적극 은폐하였음

- (재판단계) 재판단계에서는 집단 위증 행위로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
 - 행정부장은 대표병원장의 지시로 직접 재판을 모니터링하였으며, 증인 신문 직전에는 주요 증인들과 변호사 사무실에 동행해 말을 맞추기도 하는 등 위증을 교사했고, 사건관계자 7명은 재판에서 집단으로 위증

4 조직적 사법 방해 범행을 주도한 수간호사, 행정부장 등 2명 직구속

-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수간호사, 병원 행정부장 2명을 직구속하였음
 - 이 사건은 병원장 - 행정부장 - 의사/수간호사 - 간호조무사 순으로 순차 범행 은폐 지시, 폐쇄적·수직적인 병원 조직의 특성 때문에 3년간 그 은폐 행위가 밝혀지지 않았음
 - 검찰은 이 같은 대규모 사법방해 범행이 위와 같은 조직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이를 주도한 수간호사, 행정부장을 집중 수사 후 구속

5 3년간 병원과 기나긴 다툼을 이어 온 피해 아기 부모의 억울함 해소

- 피해 아기의 부모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병원 관계자들 전부가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는바, 3년간 병원 측과 기나긴 다툼을 하여 온 피해 아기 부모의 억울함을 해소
 -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범행 은폐 행위로 인해, 단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송치되었고, 그 후 1년간 검찰 직접 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아동학대로 기소될 수 있었음 ※ 신생아 학대 사건 재판은 피고인들의 계속된 위증으로 1년이 넘게 계속 중임
- 한편, 이 사건 병원은 별건 화상사고, 낙상사고 등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었는바, 당청은 적극적 수사를 통해 유사 범행의 재발을 차단하였음

V 향후 계획

- 검찰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실체 진실 발견을 통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사법질서 근간을 뒤흔드는 사법방해사범에 대하여 엄정 대처함으로써 사법신뢰 회복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